

광주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5408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연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하

변론 종결 2019. 7. 10

판결 선고 2019. 8. 21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2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2018. 11. 27. 접수 제12128호로 마친, 피고 C은 같은 목록 3, 4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212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6. 각 자녀인 피고 B에게는 별지 목록 기재 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부동산'이라 한다), 피고 C에게는 같은 목록 3, 4부동산(이하, '이 사건 3, 4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면서 원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로부터 각 2018. 11. 26.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8. 11. 27. 접수 제12128호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2129호로 피고 C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위 약정에 따라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는 2019. 2. 8., 피고 C에게는 2019. 1. 9.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내지 5호증(가시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약정해제권 행사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주위적으로, 위 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 피고들의 모친이자, 원고의 전처인 D를 당사자로 하는 것으로 D로부터 해제권약정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바 없는 피고들이 원고와 임의로 체결한 것으로 D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고, 예비적으로 가사 위 해제권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의 해제권행사 후 이를 알지 못한 D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D에 대하여는 위 증여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② 재혼한 처가 떠나 버린 후

피고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위 증여를 하였다가 재혼한 처가 다시 돌아오자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그 반환을 위 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① 위 주장은 원고의 해제권행사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청구에 대한 D의 거 절의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들이 위 증여계약의 해제효과를 부 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②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신의칙에 위반하여 무효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피고들 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엄철

별지